

응시원서

본인은 년도 제 회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기간제)근로자 채용
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만일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기재하였을 때는 관계 법령에 의거 당해 시험이 정지되거나 합격 결정이 취소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을시자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응시번호	성 명	(한글)
응시직종		(한자)
주 소		
전자우편		
전화번호 (휴대전화)		



응 시 표

년도 제 회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

※응시번호	응시직종
성명	(한글) (한자)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시험일 전날까지 강원특별자치도 총무과로 오시면 재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3. 시험 당일은 응시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 중 하나)을 지참하고 공고문에 게시된 장소 및 시간에 맞춰 입실하여야 합니다.	

응시원서 작성요령

1. 응시원서는 응시자 본인의 자필로 직접 작성합니다.
2. 응시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됩니다.
3.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합니다.

<<작성요령>>

- 1) 응시번호(「※」표시란): 응시자 작성금지(원서접수 시 응시번호 부여)
- 2) 응시직종: 응시하고자 하는 직종을 기재
- 3) 성명: 정자로 기재
- 4) 주소: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
- 5) 전자우편, 전화번호: 빠짐없이 정확히 기재

공무직(기간제) 채용 응시자용

공무직(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

강원특별자치도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공무직(기간제) 근로자 채용 응시를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수 집 항 목	성명, 주소, 연락처(핸드폰, 자택), 생일, 이메일, 경력사항, 자격사항
수 집 목 적	공무직(기간제) 근로자 채용절차 진행 - 응시자 본인 및 경력·자격사항 확인, 합격 통지, 예비 합격자 선발
보유 및 이용기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80일까지

이 력 서

1. 공통사항					
지원분야			접수번호	* 미기재	
성 명			생 일	* 생년은 미기재, 본인 확인용	
연 락 처	(본인휴대폰)		전자우편		
	(비상연락처)				
주 소	* 심사위원에게 미제공, 당사자 확인용으로만 활용				
지원 자격	* 채용계획에서 정한 지원분야에 체크 ☐ <지원분야 1>, ☐ <지원분야 2>, ☐ <지원분야 3>				
우대 사항	* 채용계획에서 정한 우대사항에 체크 ☐ <우대사항 1>, ☐ <우대사항 2>, ☐ <우대사항 3>				
2. 응시자격사항(채용계획에서 정한 응시자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작성)					
자격증	자격증명		자격증 취득(예정)일		자격 검정기관
경력	근무기관	근무기간	직 위		담당업무
3. 우대사항(채용계획에서 정한 우대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작성)					
자격증	자격증명		자격증 취득(예정)일		자격 검정기관
※ 반드시 증빙이 가능한 사항만 기록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증빙 불가 시 탈락 처리될 수 있음) ※ 직무와 관련이 없는 내용의 경우 평가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자 기 소 개 서

※ 3매 이내 작성

1. 지원 동기와 포부에 대해 작성하여 주십시오.
(휴먼명조 12p)
2. 지원한 직무와 관련하여 본인이 갖고 있는 전문지식/경험을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본인이 지원 직무에 적합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휴먼명조 12p)
3. 제한된 자원을 활용하여 과제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한 경험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 해당 업무 또는 과제 목표, 자원관리 방식, 목표 달성 여부와 구성원 동기부여 방법 등을 포함하여 작성
(휴먼명조 12p)
4. 도전적인 목표를 세우고 성취하기 위해 끈질기게 노력한 경험에 대하여 작성하여 주십시오. - 목표와 목표 수립 과정/ 수행 과정에서 부딪힌 어려움/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 노력의 결과와 느낀 점이 잘 드러나도록 작성
(휴먼명조 12p)
5. 직장, 학교 등의 조직에서 성공적으로 협업한 사례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 본인의 역할, 견해 차이 등 갈등 극복을 위한 의사소통 과정, 성과 등을 중심으로 작성
(휴먼명조 12p)

※ 직무수행과 관련 없는 본인의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과 출신 지역·혼인 여부·재산, 본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정보 기재 금지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확인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 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때는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 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 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1. 공직자로 재직 한 경험이 있는지 *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각급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해당 ☐ 비해당 ☐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여비 부당수령: 해당	해당 ☐ 비해당 ☐
3-1. 해당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사실이 있는지	해당 ☐ 비해당 ☐
3-2. 위 퇴직일(당연퇴직·파면·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1호)	해당 ☐ 비해당 ☐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해당 ☐ 비해당 ☐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또는 집행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5년 내)	해당 ☐ 비해당 ☐
4-3. 부패방지권익위법('16.3.29. 제14145호) 시행('16.9.30.) 이후 퇴직자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해당 ☐ 비해당 ☐
1, 2, 3-1, 3-2(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	해당 ☐
1, 2, 4-1, 4-2, 4-3(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2호)	해당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자료로만 활용됩니다.

년 월 일

생년월일

지 원 자

(서명)

※ 색상이 어두운 난은 대상자(법정대리인)가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이용기관 명칭	
이용사무(이용목적)	
공동이용 행정정보 보유·이용 기간 (주기적으로 정보를 조회하는 경우 조회 기간·주기 명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해 제공하는 정보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고유식별번호
공동이용 행정정보(첨부서류)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공동이용 행정정보(첨부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으며,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본인이 해당 첨부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

(필요시 기재)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년 월 일

대상자(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전화번호:

※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산림과학연구원 남부지원장 귀하

채용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본인은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기간제)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채용 및 복무 등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채용이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 및 동의합니다.

■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채용 및 복무 등 운영 조례」제15조(채용 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년 월 일
성 명 (서명)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부정합격자 합격 취소 확인서

본인은 공무원(기간제)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근로자 등 공정채용 규정」 제2조 및 제26조에 따른 부정 합격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경우 합격이 취소되거나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을 동의합니다.

■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근로자 등 공정채용 규정」 제2조(정의)

2. “채용비리”란 채용 전형 관리자 또는 채용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 또는 특정 집단의 합격 또는 불합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응시 자격, 평정 기준, 평정 결과 산정, 기타 채용절차에 대하여 법령, 내부 규정상 의무 및 공고된 사항을 위배하여 업무 처리를 함으로써 채용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거나 채용기관 내·외부에서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가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강요·지시·청탁하는 것을 의미한다.
10. “부정합격자”란 제2조제2호의 “채용비리”로 인한 합격자이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여 합격한 자를 말한다.

■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근로자 등 공정채용 규정」 제26조(합격취소 등)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하여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 상 고용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시험에 응시한 사람
2.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사람
3. 허위, 위조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사람
4. 기타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부정합격자

년 월 일

성 명 (서명)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공정채용 확인서

강원특별자치도는 채용비리 방지를 위해 기관 종사자의 친인척 채용 등의 불공정 채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입사지원자 본인의 확인을 받고자 하오니, 사실 그대로 기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본인은 강원특별자치도청에 4촌 이내의 친척이 근무하고 (있다. / 없다.)
- 친척 관계에 있다면 아래와 같습니다.

연 번	성명 (본인)	친인척 직원				
		이름	부서명	재직여부	본인과의 관계	기타
1	○○○	○○○	○○○팀	○	사촌	
2						

- 재직 중인 친인척관계의 직원이 있다면 해당 직원이 본인의 채용과 관련하여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생각한다. / 생각하지 않는다.)

기재 사항은 모두 사실이며, 추후 채용비리 사항이 확인되었을 경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입사가 취소됨을 확인합니다. 또한 본 확인서 작성 시에 인지하지 못한 친인척관계가 추후 밝혀질 경우 채용비리 해당 여부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입사가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서명)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앞면)

채용 신체검사서						사 진 (3cm × 4cm) ※ 압인 또는 계인
① 구 분	② 시험실시 기관	③ 응시직명	④ 응시번호	⑤ 성 명 (한 자)	()	
⑥ 검사 시						
⑦ 재 사 용				⑧ 주민등록번호		
검 사 내 용						
키		cm		체 중	kg	
가슴둘레		cm		혈 압		
(교정)시력	좌: ()	색 신 (색 각)		(교정)청력	좌: ()	
	우: ()				우: ()	
안 질 환				이 비 인 후 질 환		
치 아				호 흡 기 질 환		
간 질 환				신 경 질 환		
소 화 기 질 환				피 부 질 환		
순 환 기 질 환				정 신 질 환		
비 뇨 기 질 환				혈청검사(매독)		
흉 부 X 선 검 사				기 타		
위와 같이 검사했습니다.						
년 월 일						
검사자(담당의사) (인)						
검사 결과 합격 여부	[] 합 격		불합격 또는 합격 사유			
[] 불 합 격						
[] 판 정 보 류						
판정 보류 사유 및 정밀검사 필요 여부	* 필요시 소견서 별도 첨부					
위와 같이 판정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의료기관의 장 (인)						
유효기간	판정일부터 1년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응시자]

1. 응시자는 굵은 선 안에만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 가. ②란은 시험실시기관을 적어야 합니다.
 - 나. ③란에는 응시한 직명을 적어야 합니다.
 - 다. ⑦란은 신체검사 후 1년 이내에 같은 직렬의 다른 시험에 응시하는 등의 사유로 다시 사용할 경우에 적어야 합니다.
2. 응시자는 굵은 선 안쪽의 사항을 모두 적은 후에 신체검사서를 신분증[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합니다), 운전면허증, 여권 등]과 함께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검진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 ※ 응시자는 본인 질환에 대해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의 소견서를 미리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검진기관]

1. 응시자의 사진에는 반드시 압인(押印: 도장을 눌러 찍음) 또는 계인(걸침도장)을 해야 합니다.
2. "검사 내용"란은 검사자가 검사 결과를 적고 확인해야 합니다.
 - 가. 검사 결과 기재의 예: 질병명(심부전증, 백혈병, 척수종양 등)을 적거나 "정상", "양호", "이상 없음" 등으로 적어야 합니다.
 - ※ 필수사항: 질병이 있는 경우 "합격" 또는 "불합격"과 관계없이 반드시 질병명을 적어야 합니다.
 - ※ 검진기관에서는 필요시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위해 활용하고 있는 문진표를 채용 신체검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나. 임신부나 흉부X선 검사를 받을 수 없는 특별한 건강상의 이유가 있는 응시자에 대해서는 흉부X선 검사를 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면제 사유를 흉부X선 검사 항목에 적습니다.
 - (작성 예시) 임신부인 경우 "임신으로 인해 흉부X선 검사 면제"라고 적습니다.
3. "검사 결과 합격 여부"란 등에는 신체검사를 실시한 검진기관의 장이 판정 결과 등을 해당 []안에 "√"로 표시하고 그 사유 등을 적어야 합니다.
 - ※ 응시자가 본인 질환에 대해 전문의 소견서를 미리 제출한 경우 판정에 참고합니다.
 - 가. 합격 사유 기재의 예
 -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 OOOO 질환에 해당하나 OOOOOO한 이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함
(예시: '만성골수성백혈병'에 해당하나 글리벡 복용 후 세포유전학적 완전 관해(官解)에 도달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함)
 - 나. 판정보류 사유 기재의 예
 - OOO질환에 대해서는 OOO한 이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할지 의심되므로 OOO 분야 전문의의 재신체검사 필요 (예시: 중추신경계 염증성 질환이 있는 경우로 팔다리가 쇠약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할지 의심되므로 신경과 분야 전문의의 재신체검사가 필요함)
 - ※ 응시자의 질환이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판단이 곤란한 상황으로 관련 분야의 전문의가 재신체검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판정보류로 기재합니다.
4. 검사 결과에 대한 판정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앞면)

강원특별자치도 기간제근로자 관리카드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 진)		
연락처		이메일				
주소						
급여지급 계좌번호				국적		
학 력	부 터	까 지		학교명 및 전공학과		
자 격 면 허						
년월일		종 별		년월일	종 별	
경 력	근무부서	채용일	임금일당	상여금	담당업무	비고
근로계약 종료일				근로계약 종료사유		
기타사항						

기간제근로자 채용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서

강원특별자치도는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 체결을 포함한 채용과 고용 유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동법 제17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가.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 집 항 목	성명, 연락처, 이메일, 주소, 계좌번호, 학력 사항, 자격면허 사항
수 집 목 적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 체결 및 임금 지급, 고용 유지
수 집 근 거	① 「근로기준법」 제41조(근로자의 명부) 및 제43조(임금 지급),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동법 시행령 제20조(근로자 명부의 기재사항) ②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및 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보유 및 이용기간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라 근로관계가 끝난 날로부터 3년

나.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 집 항 목	주민등록번호
수 집 목 적	기간제근로자의 원천징수의무 이행, 사회보험 업무처리
수 집 근 거	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② 「국민건강보험법」 제112조(업무의 위탁) 및 동법 시행령 제8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③ 「국민연금법」 제47조(업무 위탁) 및 동법 시행령 제113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④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보험관계의 신고)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의2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유 및 이용기간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라 근로관계가 끝난 날로부터 3년

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 자	제공 목적	제공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사회보험 업무처리	성명, 국적, 월 소득액, 주민등록번호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라 근로관계가 끝난 날로부터 3년
국세청	원천징수의무 이행	성명, 고유식별키, 생년월일, 월 소득액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응시번호
주소		
반환 장소	*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 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